

광주지방고용노동청



수신 관내 사업장 대표 귀하 (경유)

제목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사항 안내

- 1. 귀 사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.
- 2.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,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**1개월이내 산업재해조사표**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**제출** 하여야 하고<위반시 1천5백만원이하의 과태료>
 -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라 사업주는 **중대재해**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**보고**하여야 합니다. <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>
- 3. 그런데도 일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제때 제출(보고)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니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 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4. 아울러,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**은폐** 한 자 또는 발생사실을 은폐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형사처벌받게 됨을 안 내하여 드립니다.<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>

붙임: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안내 1부. 끝.



근로감독관 **오유아** 행정사무관 전*월 2023. 5. 17.* **임동학**

협조자

시행 산재예방지도과-4104 (2023. 5. 18.) 접수

우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(오룡동 1110-13 정 / www.moel.go.kr/gwangju 부광주지방합동청사) 6층

전화번호 062-975-6394 팩스번호 0508-8230-0588 / kj4506@korea.kr / 대국민 공개